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34 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 조계원 • 이기헌 • 주철현

김우영 · 김문수 · 민병덕

유준병 • 박지원 • 양부남

임오경・양문석・박해철

민형배 • 정진욱 • 채현일

김윤덕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,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수질 관리,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·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함.

그런데 잠수풀장업의 경우 수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요 원 배치 등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1항제2호 중 "인공암벽장업"을 "인공암벽장업, 잠수풀장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잠수풀장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잠수풀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체육시설업의 구분・종류)	제10조(체육시설업의 구분・종류)
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	①
구분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신고 체육시설업 : 요트장업,	2
조정장업, 카누장업, 빙상장	
업, 승마장업, 종합 체육시설	
업, 수영장업, 체육도장업, 골	
프 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	
당구장업, 썰매장업, 무도학원	
업, 무도장업, 야구장업, 가상	
체험 체육시설업, 체육교습업,	
인공암벽장업	<u>인공암벽장업, 잠수풀</u>
	<u>장업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